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5027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03.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www.starpizza.co.kr

starpizza7@naver.com

[킹스타피자]

정 보 공 개 서

(주)스타푸드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스타푸드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8, 윤당빌딩 7층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02-2676-1010)
전 화 : 02-2676-1010 / FAX : 02-2676-100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주)스타푸드 코리아	킹스타피자 외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8, 윤당빌딩 7층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3.05	2015.03.05	2015.03.10	이병철	02-2676-1010	02-2676-1001
	법인등록번호	110111-5657246		사업자등록번호	430-81-0002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 용 브랜 드	주 소			
대표이사	이병철 (주)스타푸드코리아	킹스타피자 외 1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8, 윤당빌딩 7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3.01~현재		이병철	02-2676-1010	02-2676-100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킹스타피자]	
상 호	[킹스타피자]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500637820000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 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59,412	569,322	-509,909	281,294	-17,410	-3,855
2022	64,051	634,823	-570,772	154,771	-59,806	-60,862
2023	141,975	634,555	-492,580	183,826	78,143	78,191

▶ 그 근거자료는 별첨 I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킹스타 치킨은 2022년도까지 매출 분류가 어려워 합계로 표시하였으며, 2023년도는 개별적인 식자재 수급으로 매출 분석이 어려워 매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 위	담당업무
관련	이병철	대표이사	2019.03.01~현재	(주)스타푸드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이사	이병철	가맹사업 경영	2019.3. ~ 현재	킹스타피자(등록번호: 20150271)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5~현재	킹스타치킨(등록번호:20190614) 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킹스타피자 (상표권)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 령할 권리	2016.03.25	4500637820000	(주)스타푸드 코리아	2026.03.25
킹스타피자 (서비스표권)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 를 수령할 권리	2016.07.20	4103663300000	(주)스타푸드 코리아	2026.07.20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킹스타피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5 년 3월 5일

2. [킹스타피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스타푸드코리아	킹스타피자	김미선	2015년 3월 5일-201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03, 2층
(주)스타푸드코리아	킹스타피자	이병철	2019년 3월 1일-2023년 05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5, 한특빌딩 3층
(주)스타푸드코리아	킹스타피자	이병철	2023년 05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8, 윤당빌딩 7층

3. [킹스타피자] 업종

영업표지	업종	
킹스타피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피자	피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주)스타푸드코리아 관할 [킹스타피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2	52	0	42	42	0	34	34	0
서울	6	6	0	6	6	0	2	2	0
부산	1	1	0	1	1	0	1	1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2	2	0	0	0	0	0	0	0
광주	4	4	0	2	2	0	2	2	0
대전	1	1	0	1	1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경기	18	18	0	13	13	0	12	12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0	1	1	0	0	0	0
전북	8	8	0	7	7	0	6	6	0
전남	8	8	0	8	8	0	8	8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3	3	0	3	3	0	3	3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주)스타푸드코리아 관할 [킹스타피자]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54	6	0	8	2	52	-2
2022	52	0	0	10	1	42	-10
2023	42	0	0	8	2	34	-8

6. [킹스타피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킹스타피자]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스타푸 드코리아/ 이병철	킹스타치킨	20190614	치킨	2/0	2/0	2/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34	116,600	11,779	466,922	26,116	9,926	655	
서울	2	-		-		-		5곳미만
경기	12	124,030	9,232	197,926	15,229	40,002	2,870	
인천	0	-		-		-		해당없음
강원	0	-		-		-		해당없음
대전	0	-		-		-		해당없음
세종	0	-		-		-		해당없음
충북	0	-		-		-		해당없음
충남	0	-		-		-		해당없음
전북	6	179,767	15,680	466,922	26,116	56,720	5,199	
광주	2	-		-		-		5곳미만
전남	8	96,215	8,495	168,320	16,832	36,744	3,674	
대구	0	-		-		-		해당없음
경북	0	-		-		-		해당없음
부산	1	-		-		-		5곳미만
울산	0	-		-		-		해당없음
경남	3	-		-		-		5곳미만
제주	0	-		-		-		해당없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2.5]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킹스타피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킹스타피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4	1,869일(5년1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을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642	1,642	-	
광고	비공개	비공개	1,642	1,642	-	
판촉	비공개	비공개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9 (양평동4가)	02-2672-1811

※ 귀하는 가맹금을 [신한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예치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스타푸드

코리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맹금 예치제도와 병행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스타푸드코리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330만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최대 1억원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킹스타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52,6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 전기승압 공사,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 급 대 상	예 치 대상 여 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	-	-	-	
가맹비	1,100	계약체결 후 즉시	개점 전 계약 해지	개점 후 기간경과로 인한 소멸	가맹비는 소멸성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시작 1일 전 계약 해지	제조기술·노하우 전수, 교육용 식자재 제공비 등	교육개시 후 반환불가

2) 당사는 회사방침에 따라 일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3,3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3,300
가 맹 비	1,100
교 육 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4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49,300				
필수설비 (정착물)	협력업체	20,700	면적 상관없이 금액 동일	설치 당일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점주 개별시공	17,600	1,760	설치 당일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간판	점주 개별시공	5,000		설치 당일	공사 전 계약취소	
피자기자재 및 주방용품	(주)스타푸드코리아	2,500		설치 당일	상품 미공급시	권장
홍보·관측물·오픈이벤트	(주)스타푸드코리아	3,500		설치 당일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사항

- * 인테리어공사 (예비점주가 킹스타피자 컨셉에 맞추어 자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당사는 감리비와 관련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 간판 공사 (인·허가 규정 사항 준수)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시공사항이므로 건물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
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의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동행답사 → 현장조사 등 시장조사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고,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가능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가능 자	-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킹스타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Ⅲ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비고
----	------	----	------	------	-------	----

					없는 사유	
로열티	당사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당사	협의분담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광고의 미시행	광고 시행	
관측분담금	당사	협의분담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관측행사 미시행	관측행사 시행	
교육훈련비	당사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업자 (자체시공)	2,000-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10,000- 20,000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선비용	해당업자 (자체시공)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30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18%	지연기간			물품대금 등의 납부지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재고·회계처리에 관한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는 금전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제39조의 계약갱신 절차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킹스타피자]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스타푸드 코리아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2,200,000원)<부가세 포함> + 전단지 및 소모품비 (₩2,200,000)<부가세 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킹스타피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원.부재료의 경우, 영업지역에 따라서 KS푸드, DS푸드, 퓨전푸드 중 하나의 업체와 거래하게 됩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당사는 [킹스타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킹스타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 고
치즈피자	당사의 가맹사업의		

페퍼로니피자	통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1주일 전 서면통보 후 물품공급 중단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서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수퍼슈프림피자			
고구마피자			
하와이언피자			
핫스파이시치킨피자			
베이컨포테이토피자			
불고기피자			
고르곤졸라피자			
쉬림프콤비피자			
고구마무스피자			
단호박피자			
핫직화불고기피자			
베이컨체다치즈피자			
하와이언쉬림프피자			
허니갈릭쉬림프피자			
더블치즈피자			
더블페페로니피자			
치킨텐더피자			
갈릭비프스테이크피자			
와규소보로피자			
허니갈릭텐더피자			
핫치킨쉬림프피자			
핫제육쉬림프피자			
블러디소보로피자			
세노리따피자			
아보카도바이트피자			
트리플미트피자			
콰트로미트피자			
새우링			
치킨텐더			
치즈오븐 포테이토			
치즈오븐 스파게티			
로제 파스타			

화이트크림 파스타			
치즈오븐 치킨텐더			
달달 콘치즈			
까르보나라 빠네			
쉬림프 로제빠네			
로스트치킨 wing&스틱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배달신청 고객	모든 판매품목	당사의 영업방침에 반하여 주문배달 영업을 하는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됨	▶1회 위반: 1주일전 서면통보후 물품중단 ▶2회 위반: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최후통첩)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등 물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치즈피자	8,000(M)10,000(L)	공문 발송 및 전화 통지	당사와 귀하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 권장 소비자 가격을
페퍼로니피자	9,000(M)11,000(L)	"	
수퍼슈프림피자	11,000(M)13,000(L)	"	
고구마피자	11,000(M)13,000(L)	"	
하와이언피자	11,000(M)13,000(L)	"	

핫스파이시치킨피자	11,000(M)13,000(L)	"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베이컨포테이토피자	12,000(M)14,000(L)	"	
불고기피자	12,000(M)14,000(L)	"	
고르곤졸라피자	12,000(M)14,000(L)	"	
쉬림프콤비피자	13,000(M)15,000(L)	"	
고구마무스피자	13,000(M)15,000(L)	"	
단호박피자	14,000(M)16,000(L)		
핫직화불고기피자	14,000(M)16,000(L)	"	
베이컨체다치즈피자	14,000(M)16,000(L)	"	
하와이언쉬림프피자	16,000(M)18,000(L)	"	
허니갈릭쉬림프피자	16,000(M)18,000(L)	"	
치즈프라이피자	14,000(M)16,000(L)	"	
더블치즈피자	17,000(L)	"	
더블페페로니피자	18,000(L)	"	
치킨텐더피자	17,000(M)19,000(L)	"	
갈릭비프스테이크피자	17,000(M)19,000(L)	"	
와규소보로피자	17,000(M)19,000(L)	"	
허니갈릭텐더피자	17,000(M)19,000(L)	"	
핫치킨쉬림프피자	17,000(M)19,000(L)	"	
핫제육쉬림프피자	17,000(M)19,000(L)	"	
블러디소보로피자	17,000(M)19,000(L)	"	
세뇨리따피자	19,000(M)21,000(L)	"	
아보카도바이트피자	19,000(M)21,000(L)	"	
트리플미트피자	19,000(M)21,000(L)	"	
콰트로미트피자	20,000(M)22,000(L)	"	
새우링	5,500	"	
치킨텐더	6,000	"	
치즈오븐 포테이토	7,000	"	
치즈오븐 스파게티	7,000	"	
로제 파스타	7,000	"	
화이트크림 파스타	7,000	"	
치즈오븐 치킨텐더	7,000	"	
달달 콘치즈	6,000	"	
까르보나라 빠네	8,000	"	
쉬림프 로제빠네	8,000	"	
로스트치킨 왕&스틱	8,000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류의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킹스타피자』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영업의 범위 및 방법·변경 가능성과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별첨

① 당사는 점포소재지에 대한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귀하의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②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귀하의 가맹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협의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킹스타 피자’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100%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킹스타피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9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9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9조 1항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9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9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가 맹 계 약 의 해 지 사 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2항
▶ 귀하가 허용한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제2항
▶ 귀하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내지제2항
▶ 귀하가 시설의 보수·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제14조 제5항
▶ 귀하가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
▶ 귀하가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2조 제1항내지제2항
▶ 귀하가 당사의 정당한 감독 및 시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제1항
▶ 귀하가 광고나 판촉행사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귀하가 물품대금 등을 연체한 경우	제28조 제1항내지제2항
▶ 귀하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 제3항
▶ 귀하나 귀하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 제4항
▶ 귀하가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34조

	제1항내지제2항
▶귀하가 회계자료 통보나 관련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내지제2항
▶귀하가 영업의 양도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내지제2항
▶귀하가 영업의 상속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내지제2항
▶귀하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42조 제1항내지제2항

다만, 아래 표의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0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제40조 제2항

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0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승인통지후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TEL 02-2676-1010)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교육비(2,200,000원)<부가세 포함> + 전단지 및 소모품비 (2,200,000원)<부가세 포함>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등이 완납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 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 승인 여부 통지→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승인에 관한 절차는 양도절차에 준용한다.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락없이 자신(직계가족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당사가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피자 판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여부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TEL 02-2676-101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킹스타피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주당 6일 이상, 월26일 이상	문의 : 당사 (TEL 02-2676-1010)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귀하는 당사의 서면승인을 얻은 경우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휴업개시 희망일 7일전까지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

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제한없음	대체근무 가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킹스타피자]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전체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수에 따라 안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모집광고비용전액+상품광고비의 50%	상품광고비 50% 중 가맹점 수에 따라 안분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전액	없음		
개별행사		팜플렛· 카달로그· 전단지 등의 비용은 당사가 부담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지역내 광고
관측 전체행사		할인판매의 경우 당사가 할인비용의 50%분담	할인판매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할인비용의 50%분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년간 행사 계획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없음	없음	없음	

(※ 관측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광고의 경우 50% 이상 동의시 전체 적용)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승인을 얻어 광고나 관측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광고나 관측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지, 카달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킹스타피자』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와 당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귀하와 당사는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③ 귀하와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본 계약으로 인하여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연 18%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52,6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 상담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45	-
사업 설명 ·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D-44~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잠정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보증보험으로 대체)	D-27(1일)	3,3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6~24(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3(1일)	-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 공사 실시(내장, 간판 등)	D-22~5(18일)	22,600 (33m ² 기준)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
설비 및 물품공급	- 물품 등 공급	D-6~3(3일)	26,700 (설비 및 물품 납품완료 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진행 과정에서 점포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개 · 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설비, 식기세척기, 냉난방기/오디오 구입 비용은 별도입니다.

▶ 귀하는 [8]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스타푸드코리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귀하가 원하여 당사가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귀하 등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의한 해결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나 귀하는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	---------	---------	------	------	----

	비용 항목	비용 비율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2-2676-101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당사 02-2676-1010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경영상 지원 제도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요청 매장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킹스타피자] 가맹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킹스타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 소 시 간	비용(단위 : 천원)	비 고
신규 교육	50시간	2,000(부가세별도)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순회 또는 수시 교육)	1~3시간	해당없음	신제품 출시 매장 관리

3. 교육·훈련의 주체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당사가 지정한 인원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가 정한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점을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간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근무할 수 없으며, 물품 등의 공급중단 사유나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당사 가맹개설팀(02-2676-101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starpizza.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I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Ⅱ

가맹점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Ⅲ

물품상세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IV

원·부재료 공급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